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
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5. 8. 30.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'95.8.2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'95.8.24.

다. 상정일자 : 제33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('95.8.29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류승권 세무관리과장)

가. 제안이유

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을 행정권한위임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농수산물 유통시설등(구판사업 등)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지방세 경감사항을 부동산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, 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세완납증명서·미과세증명서발급사무의 위임사항 삭제(안 제6조의2)
-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사항을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으로 개정(안 제19조)
-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사항을 규정함(안 제2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
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경감규정이 부동산으로 통합규정되어 동 조례 제2장 제2절 재산세에만 규정되어 있었고, 제3절 종합토지세에는 경감규정이 삭제되어 있어 법규적용상착오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

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종전의 부동산을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법규적용상의 문제점을

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도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

안 제6조2의 규정인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권한위임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일자 : 1995.8.23.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의안 번호	16
----------	----

1. 개정이유

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을 행정권한위임조례로 규정키 위하여 동조례에서는 삭제하고, 농수산물 유통시설등(구판사업등)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지방세경감사항을 부동산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, 규정코자 함.

2. 주요 개정골자

- 지방세완납증명서·미과세증명서발급사무의 위임사항삭제(안 제6조의2)
-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사항을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을 개정(안 제19조)
-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사항을 규정함(안 제28조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5.1.5. 법률 제4877호) 제15조 및 제95
- 지방세법(1994.12.22. 법률 제4794호) 제39조 및 제266조제3항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필요성 : 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증개정조례(안)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6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①
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“구판사
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
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
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용
건축물을 말한다.

1. 구매·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
2. 보관·가공·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
축물
3.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
4.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(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)①법
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“구판사업등
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
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함은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
지를 말한다.

1. 구매·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
2. 보관·가공·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
지
3.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
4.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

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제에 의한 종합토지
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제6조의2(납세증명서등의발급사무의 위임) 구 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	(삭	제)	
	제19조(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경감)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“구판사업용 등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 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 함은 다 음의 것을 말한다. 1. 구매·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. 보관·가공·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3.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4.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한다. (신 설)			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경감)①법 제266조제3항및 제4항에서 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 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건축물을 말한다. 1. 구매·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. 보관·가공·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 축물 3.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.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세의 경감률을 100분의50으로 한다.
				제28조(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)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. 1. 구매·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. 보관·가공·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 지

현	행	개	정	안
		3.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.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법제266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종합토지 세의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		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
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5. 8. 30.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'95.8.23.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'95.8.24.

다. 상정일자 : 제33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
('95.8.29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류승권 세무
관리과장)

가. 제안이유

중소기업공장 입지난 해소 및 지역발전
촉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
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기
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
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
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.
(안 제16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박관
수)

동 개정조례안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
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과 지방세법 제276조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공장 입지
난 해소의 종합대책으로 현재도(시·군)지역
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특별
시·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시킴으
로써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
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최초
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50%의 감면규정을
신설하는 것으로,

자치구 세원확충을 위하여는 되도록 감면
대상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하
나 난지도 등 토지의 가용자원이 풍부한
마포구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의
유치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
사료되므로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세원확충

에 힘써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및답변요지 : 없음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결과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5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5.8.23.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중소기업공장 입지난해소 및 지역발전촉진
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
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동조
례를 개정하는것임.

2. 주요 개정골자

-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최초과세기준
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
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
(안 제16조의2)

3. 개정근거

- 지방세법(1995.1.5. 법률제4297호)제276조
-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(1995.1.5.
법률제4919호)제29조
- 지방자치법(1995.1.5. 법률제4877호)제15
조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필요성 : 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아파트형 공장에 대한감면)공업
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제2
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